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8633
등록일자	2014.12.30.
결재일자	2014.12.3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차지도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이가연	황선옥	김구연	조흥기	12/31 주윤중	
협조자					

- 교통 법질서 확립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

## 2015년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출근 및 심야시간대 중점 단속으로 대중교통이용 불편 최소화
- 사업용차량 운송사업체 및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법규위반행위 근절

### 【세부추진 계획】

#### □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

- 사업용차량 운송사업체 및 운수종사자 법규위반행위 재발 방지
- 민원다발지역 중점적 단속추진

#### □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경각심 고취

-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근무방법

노선명	구 간	연장 (km)	근무자	운영시간	비고
			(직원)		
압구정로	한양(아)사거리 ~ 한남대교 남단	2.5	1명	07:00 ~ 21:00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는 상황에 따라 수시 탄력적으로 운영
남부순환로	학여울역사거리 ~ 양재역사거리	3.7	1명	07:00~10:00,17:00~21:00	

#### □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적정성 보장 강구

강 남 구  
(주 차 관 리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b>관련 규정 및 근거</b>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li>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88조, 제94조등</li>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제46조, 제49조 『별표 3,5,6』</li> <li>•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7조, 제70조등</li> <li>•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16조, 『별표 1,2,3,5』</li> <li>•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등),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li> <li>•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1(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li> </ul>																											
<b>추진 경위</b>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경위 : 2015년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계획수립</li> </ul>																											
<b>예산 사항</b>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예산반영</li> </ul>																											
<b>수혜자 및 범위</b>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사업용자동차(택시·버스·화물 등) 이용자 및 관련주민</li> </ul>																											
<b>분야 별 검토사항</b> [계속 : ] [신규 : ]	<p>이 업무(사업)와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0 )</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0 )</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①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①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b>타 기관 사례</b>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구 사업용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 분석</li> </ul>																											
<b>전문가 자문</b>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 2015년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추진계획

건전한 교통 법질서 확립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사업용차량 법규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2015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I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1조, 제26조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등

### ■ 세부추진계획

- **출근시간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및 계도**
  - 단속시간 : 07:00 ~ 09:30(평일)
  - 단속장소 : 무역센터(아셈로), 학동역 출구, 청담역 출구 등 민원다발지역
  - 단속인원 : 3인 1조 4개팀 편성 운영(주차단속팀 합동단속)
  - 단속내용 : 택시 합승, 장기정차 여객유치, 불법주정차단속 등
  - 단속방법 : 차량 CCTV 및 인력 단속 병행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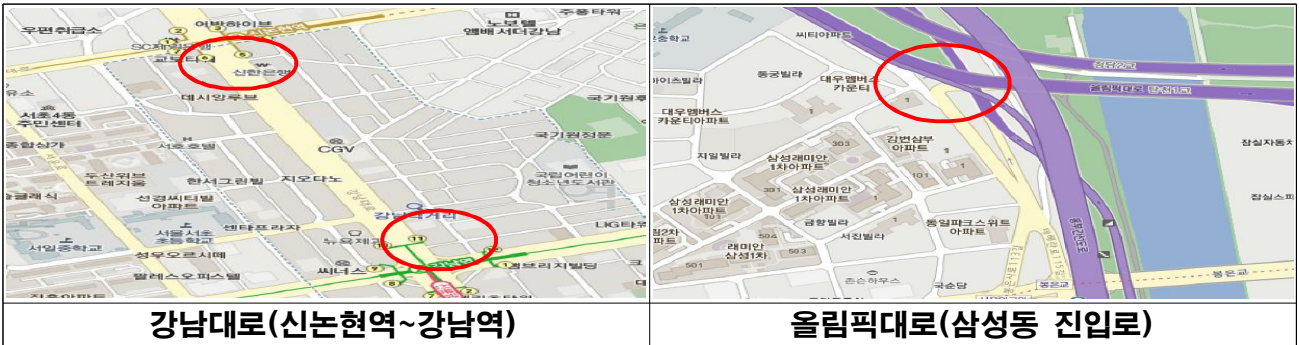
### ※ 주요단속지점 위치도



## ○ 심야시간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및 계도

- 단속시간 : 22:00 ~ 익일 03:00(월2~3회 이상)
- 단속장소 : 청담CGV,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등 강남구 전역
- 단속인원 : 3인 1조
- 단속내용 : 합승, 승차거부, 사업구역외 영업, 차고지의 밤샘주차, 자기용유상운송행위등
- 단속방법 : 위반차량 동영상 확보 및 차량 CCTV를 이용한 단속 실시

### ※ 주요단속지점 위치도



## ○ 자가용유상운송행위(콜뛰기) 특별 단속 추진

- 단속일시 : 심야시간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시 병행 추진  
(필요시 서울시, 경찰서 합동 단속 추진)
- 단속장소 : 강남구 관내 취약지점
- 단속방법
  - 자가용유상운송행위 중점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단속 추진
  - 단속시 자인서 징구 후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
- 처분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유상운송 자가용 운행정지 처분

## ○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지도 단속

- 단속기간 : 상·하반기 2회
- 단속인원 : 8명(4인 1조) 2개반 운영
- 단속대상

대상	업종별 현황		
	일반화물	주선업	법인용달
194개사	60개사	122개사	12개사

- 단속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운송과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과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여부
  -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 화물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

## ○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

- 단속기간 : 상·하반기 2회
- 단속인원 : 주차지도팀원 및 해당 운송사업 조합원 합동 단속
- 단속대상

대상	업종별 현황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장의(특수)버스	전세버스
39개사	1개사	7개사	5개사	22개사	4개사

- 단속내용
  - 청소상태, 도색상태, 내·외부 전구상태, 복장위반 상태
  - 불법광고(성매매 광고 알선), 후진등·미등불량, 시트훼손
  - 불법부착물 제거, 하차벨 교체 및 실내등 교체, 손잡이 고정 조치
  - 카드 단말기 정상여부, 영수증 발급상태 정상여부 등

## ○ 설·추석 연휴기간 심야택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

- 단속일시 : 2015.02.17~02.20, 2015.09.25~09.28 [18:00 ~ 익일 02:00]
- 단속장소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주변
- 단속인원 : 10명(5인 1조)
- 단속내용
  - 귀성, 귀경길 특별 집중 계도 및 “승객 택시 태워주기” 위주 현장계도
  - 승차거부,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외 영업, 부당요금 징수등

## II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등),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1(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 ■ 세부추진계획

### ○ 버스전용차로 단속 운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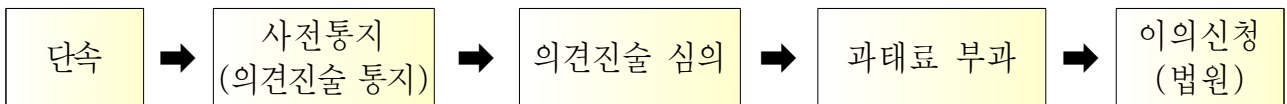
압구정로, 남부순환로 2개노선 인력단속(근무자 각1명) → 도보단속(캠코더)실시  
 → 당일단속자료 정리 및 입력 → 일일보고

### ○ 버스전용차로 단속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km)	근무자	운영시간	
			(직원)		
압구정로	한양(아)사거리 ~ 한남대교 남단	2.5	1명	07:00 ~ 21:00	전일제
남부순환로	학여울역사거리 ~ 양재역사거리	3.7	1명	07:00~10:00, 17:00~21:00	시간제

###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사전통지 :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의견진술 심의 : 교통민원신고심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결정
- 과태료 부과 : 승용자동차 50,000원, 승합자동차 60,000원
- 이의신청 :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청에 신청,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의뢰
- 체납처분
  -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과태료의 5%
  - 증가산금 징수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2%
  - 증가산금의 징수기간 :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체납과태료의 77%까지)
  -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차량 압류등록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88조, 제94조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제46조, 제49조『별표 3,5,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7조, 제70조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16조,『별표 1,2,3,5』

### 세부추진계획

#### ○ 자가용유상운송행위 행정처분

- 처분대상 :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기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처분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자가용 운행정지  
☞ 번호판 미반납 시, 과태료 50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자가용 운행정지  
☞ 번호판 미반납 시, 과태료 300만원

#### ○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취소 행정처분

- 처분대상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자
- 처분절차 : 교통안전공단 ⇒ 서울시 택시물류과 ⇒ 해당 자치구 취소자 명단 통보
- 처분기준 :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강행법규 사항)

#### ○ 운수종사자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사업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등
  - 특별검사 :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적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처분기준
  - 운송사업자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30일
  - 운수종사자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운전자과태료 50만원

## ○ 운전종사자자격증 미취득자 행정처분

- 처분대상 : 운송운전업무 종사자격 미취득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처분기준
  - 운송사업자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30일
  - 운수종사자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운전자과태료 50만원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운전자과태료 50만원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 신고주기 :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 신고내용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형식 등
  -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
- 처분기준
  - 1차 행정처분 : 사업정지 30일
  - 2차 행정처분 : 허가취소

## ○ 운송사업의 휴·폐업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신고

- 신고내용
  -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휴·폐업신고
  -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 및 차량대수 변경등
- 처분기준
  - 휴·폐업신고 미이행 : 허가취소
  - 변경신고 미이행 : 변경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일부정지(3, 5, 30, 60일)



## ○ 교통사고 유발자 행정처분

- 처분대상 : 1건의 교통사고로 중상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운송사업자
- 처분시기 : 상·하반기 2회, 서울시의 교통사고유발자 명단통보에 의거
- 처분기준

업종별	구 분	기준인원	처분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 망	40명 이상	감차명령(10대 감차)
		30명 이상 39명 이하	감차명령(8대 감차)
		20명 이상 29명 이하	감차명령(6대 감차)
		10명 이상 19명 이하	감차명령(4대 감차)
		8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일부정지(180일)
		5명 이상 7명 이하	사업일부정지(120일)
		2명 이상 4명 이하	사업일부정지(60일)
	중 상	40명 이상	감차명령(5대 감차)
		30명 이상 39명 이하	감차명령(4대 감차)
		20명 이상 29명 이하	감차명령(3대 감차)
10명 이상 19명 이하		사업일부정지(120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 망	10명 이상	감차조치(2대)
		5명 이상 9명 이하	감차조치(1대)
		3명 이상 4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중 상	10명 이상	감차조치(1대)
		5명 이상 9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3명 이상 4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 15일
		2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 ○ 택시법인업체 전액관리제 위반

- 처분대상
  - 운수사업자 :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지 아니한 경우
  - 운수종사자 :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시기 : 서울시 택시물류과 전액관리제 행정처분의뢰통보에 의거
- 처분기준
  - 운송사업자 : 과태료 500만원
  - 운수종사자 : 과태료 50만원

## ■ 운수과징금 및 운전자과태료 부과관리

- 운수과징금 :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 ☞ 자납경감 및 가산금 적용이 안되며,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 운전자과태료 : 구 일반회계 ☞ 자납경감(20%) 및 체납시 가산금 적용
- 운전자과태료 체납처분(현년도분)
  -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과태료의 5%
  - 증가산금 징수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2%
-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차량 압류등록

## IV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회 운영 및 행정처분

###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3조, 제2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등

### ■ 세부추진계획

- 120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 구 성 : 11명(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방법 및 기준
    - 월 2회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120 교통민원신고 내용, 버스전용차로 의견진술서 확인 및 처분내용 의결
- 120 교통민원신고 처분기준

부과	경고	불문	처분불가
과태료/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위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차량번호 착오신고 등 잘못 신고 된 경우,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요예산

### ■ 소요예산 : 11,600,000원

-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일반수용비----- 3,200,000원
  
-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근무자 새벽 급량비----- 8,400,000원  
- 산출내역 : 7,000원 × 10일 × 10명 × 12월 = 8,400,000원

### ■ 지급방법 : 단속결과 복명서에 따라 월별 개인별 계좌 입금

### ■ 예산과목

- 주차관리과, 선진교통체계 확충 및 수립,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소통개선,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참고자료 : 1. 사업용차량 주요단속지역 및 단속내용  
2.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 및 노선도  
3. 120 교통민원신고 주요유형 및 행정처분 절차  
4.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주요 단속내용  
5. 사업용차량 위반행위별 주요 행정처분 기준

【 참고자료 1 】

◎ 사업용차량 주요단속지역 및 단속내용

◆ 주요 단속지역(구간) 및 단속내용

단속지역(구간)	단속내용	단속대상	비고
강남대로(신사역~양재역), 학동역등	승차거부, 합승	택시	
강남역, 양재역등	사업구역외 영업, 장기정차 여객유치	택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수서동등	차고지외 밤샘주차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청담역, 삼성역, 논현역, 압구정역등	정류소 정차질서문란	노선버스, 택시	
논현동, 대치동등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사업용차량이 아닌 차량	

◆ 근무방법

구 분	근무시간	근무인원	근무형태	근무방법
새벽단속	07:00~09:30	3인이상	팀원 순환근무	매일
주간단속	09:00~18:00	2인 1조	사업용차량 단속직원	매일
심야단속	22:00~익일 03:00	3인이상	팀원 순환근무	월 2~3회 (민원발생시 수시)

【 참고자료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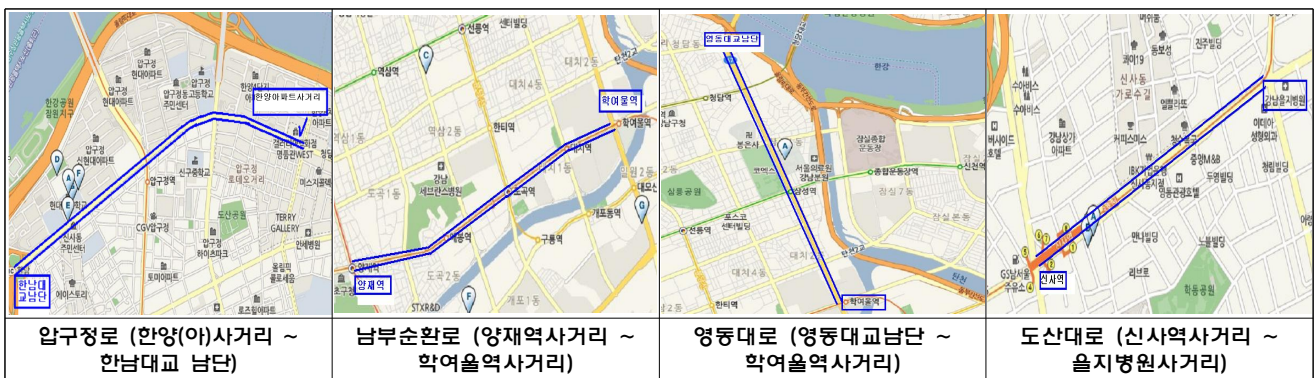
◎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 및 노선도

◆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 - 4개노선, 10.6km

도로명	종 류	구 간	연장(km)	운영개시일	운영시간
압구정로	가로변	한양(아)사거리~한남대교 남단	2.5	1995. 4	전일제
남부순환로	가로변	양재역사거리~학여울역사거리	3.7	1996. 8	시간제
영동대로	가로변	영동대로남단~학여울역사거리	3.5	1995. 5	전일제
도산대로	가로변	신사역사거리~을지병원사거리	0.9	1998. 2	시간제

※ 전일제[07:00 ~ 21:00], 시간제[07:00 ~ 10:00, 17:00 ~ 21:00]

◆ 버스전용차로 설치 노선도



**【 참고자료 3 】**

**◎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주요 단속내용**

**택 시**

**□ 승차거부**

- 개념 : 빈차등을 켜고 운행중인 영업차량의 운전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단속내용
  - ▷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하차시키거나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 사업구역외 운행관련
    -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운행의무는 없으나 승객이 요구할 경우 경계적정 지점까지 운행하여야 함(공동사업구역 제외)

**□ 합승**

- 단속지역 : 지하철역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특히, 출근시간대 중점 단속)
- 단속내용
  - ▷ 승객을 태운 후 다른 승객을 승차시키는 행위(승객의 양해를 얻어도 제지가 신고시 합승으로 간주)
  - ▷ 2명이상의 승객에게 각각 미터기의 요금을 받는 행위 등

**□ 사업구역외 영업**

- 근거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의 사업구역은 특별사관역시 또는 사군단위로 함.
- 단속내용
  - ▷ 사업구역외로 갔다가 귀로 방향이 아닌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귀로영업 가능)
  - ▷ 공동사업구역 영업 가능(3개 지역 : 인천공항, 김포공항, 광명시)
  - ▷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외로 갔다가 승객을 태우고 공동사업구역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볼 수 없음

**□ 장기정차 여객유치**

- 단속지역 : 관내 전지역(출·퇴근시간 또는 심야 집중 단속)
- 단속내용
  - ▷ 역, 터미널, 공항,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서 장기정차 후 승객을 유인, 호객하는 행위
  - ▷ 합승을 목적으로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지 않고 계속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 ▷ 장기 정차중이나 운전자가 승객에게 호객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단순히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우 단속대상이 되지 않음)

## □ 복장 규정 미준수

### ◦ 금지복장

- ▶ 상의 - 풀티, 소매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등으로 디자인 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 하의 -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 된 바지
- ▶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 된 모자
- ▶ 신발 - 발등과 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 버 스

## □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등

- 집중단속지역 : 삼성역, 강남역, 역삼역 주변 및 압구정동 등 버스정류소
- 단속내용
  - ▶ 정류소 정차범위 미준수 단속 : 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전후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 ▶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단속
  - ▶ 개문발차 및 난폭운전등 단속

##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 □ 차고지외 밤샘주차(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등)

- 개념 : 지정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 단속지역 : 신사동 미성아파트 뒷길, 개포4동 혈액원길, 삼성1동 올림픽대로 진입로 (GS칼텍스앞), 탄천길, 탄천공용주차장등 취약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
- 단속내용
  - ▶ 타 지역 등록번호로서 관내 심야시간대 차고지외 주차하는 행위(1시간 이상)
  - ▶ 타 지역 등록번호이나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서울에 있는 경우 단속제외
  -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제외

【 참고자료 4 】

◎ 사업용차량 위반행위별 주요 행정처분 기준

업종	위반행위	개 념	행정처분 내용		위반법조항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택시	승차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시행령[별표6] 과태료 20만원 시행규칙[별표5] 자격정지 10일(1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1호
	장기정차 여객유치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시행령[별표6] 과태료 20만원 시행규칙[별표5] 자격정지 10일(1차)	법 제26조 제1항제3호
	합승	여객을 합승토록 하는 행위	-	시행령[별표6] 과태료 20만원 시행규칙[별표5] 자격정지 10일(1차)	법 제26조 제1항제4호
	복장규정 미준수	금지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시행령[별표6] 과태료 10만원	법제21조제5 항/제26조제1 항8호
	사업구역외 영업	면허받은 사업구역외 행정 구역에서 상주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5] 과징금 40만원	-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미터기 미사용	미터기를 부착하지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5] 과징금 40만원	-	법 제8조/ 제85조 제1항제10호
	부당요금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시행령[별표6] 과태료 20만원 시행규칙[별표5] 자격정지 10일(1차)	법 제26조 제1항제2호
	정류소정차질서문란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시행령 [별표5] 과징금 20만원	-	법 제21조/ 법 85조 제1항제21호
버스	승하차전출발, 무정차통과	여객이 승하차하기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	-	시행령[별표6] 과태료 10만원	법 제26조 제1항제6호
	정류소외 승하차	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	시행령[별표6] 과태료 10만원	법 제23조 및 제26조
	개문발차 운행	버스문을 연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	시행령[별표6] 과태료 20만원	법 제26조 제1항제5호
	난폭운전	버스내 급출발·급정거로 불편을 주는 행위 등	-	시행령[별표6] 과태료 10만원	법 제23조 제1항제9호
	차내안내방송 미실시	버스 차내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시행령 [별표5] 과징금 10만원	-	법 21조
화물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정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과징금10~20만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